

| 설명자료 |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

# 1. 연구비 입금 지연 및 부족 시 선집행 근거 마련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대학

“연구비예산이 늦게 지급되어 인건비 지급이 곤란한 경우 발생”



출연연

“과제협약 지연에 따라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어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과제개시일에 연구비 가지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신규과제

- ✔ 연구과제 선정 이후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 소관부처로의 예산 배정 지연, 선정된 연구과제별 연구비 조정,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금 확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계속과제

-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연도별로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움에도 초기 연구계획대로 **연도별 연구비를 지급함에 따라 환경변화계획변경 시 연구비가 부족한 경우 발생**

➔ **연구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등 원활한 연구 수행에 차질**

# 1. 연구비 입금 지연 및 부족 시 선집행 근거 마련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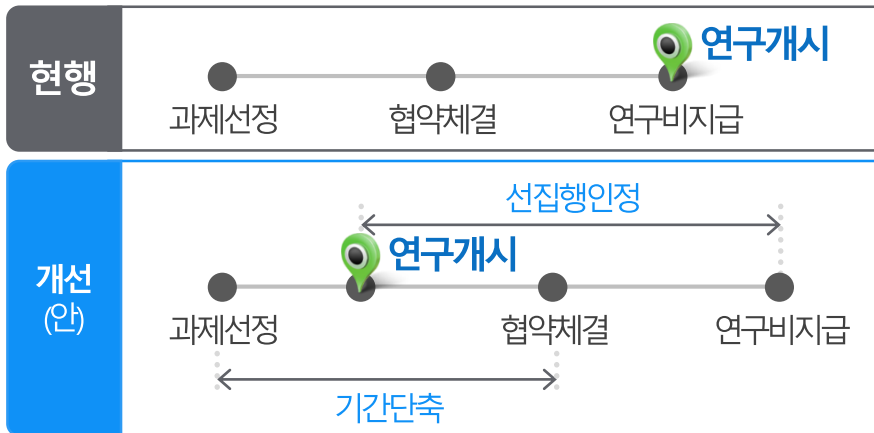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 개선방안

### 신규과제

과제선정 통보시점부터 연구를 개시하고 연구비 지급 시 까지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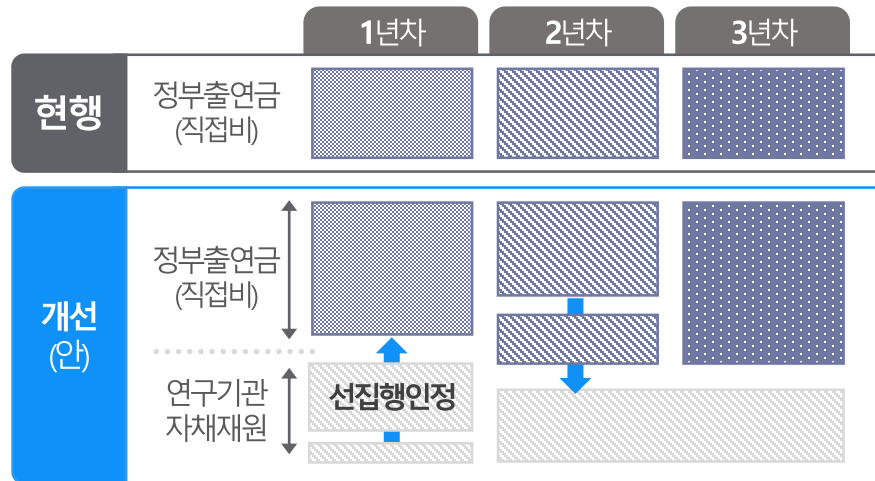
- 협약체결 시 협약개시일을 과제선정 통보시점으로 소급적용 인정



###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을 허용

※ 단, 무분별한 활용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승인 필요



## 공통

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단축을 위한 서류·양식 등의 간소화를 추진

## 2.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2-1. 연구계획서에 미리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 인정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혁신법

시행령



대 학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집행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종료 후에도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제 종료 후에는 논문게재료 집행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 ✔ 논문게재료는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 직접비로 집행 가능
- ✔ 하지만 현장에서는 '표준매뉴얼'을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불인정

# 2.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2-1. 연구계획서에 미리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 인정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혁신법

시행령

### 개선방안

#### 직접비

-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이더라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인정**  
\*해당 논문과 관련이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명확히 사사표기하고 성과등록
-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부당집행기준**에서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삭제

#### 개선전후 비교

##### 직접비

표준매뉴얼에 따른  
부당집행기준

##### 현행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불인정**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등



##### 개선(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도 **인정**  
(단, 현재 수행과제와 관련성 필요)

- 삭제 -

## 2.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2-2. 비영리기관에서의 논문게재료 간접비 계상 허용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시행령



출연연

“과제종료 후 SCI급 논문 성과를 위해 약 2년 이상이 소요되어 과제기간 내 투고, 심사, 게재 완료가 어려움”

“과제종료 후 대학은 연구활동지원금으로 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집행이 가능하나 출연연은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 ✔ 논문게재료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로 집행 가능
- ✔ 하지만 간접비 지원은 대학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관의 예산 사정 등으로 원활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 발생

# 2.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2-2. 비영리기관에서의 논문게재료 간접비 계상 허용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시행령

### 개선방안

#### 간접비

- ✓ '대학'에만 허용되던 간접비에서의 논문게재료 집행을 대학, 출연연 등 전체 비영리기관으로 확대 허용
  -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서 논문게재료 지원여부 등을 지표로 활용

#### 개선전후 비교

##### 간접비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 현행

##### 대학에만 논문게재료 인정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생략)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생략)



##### 개선(안)

##### 모든 연구기관에 논문게재료 인정

연구활동 지원금 : (생략) 논문 게재료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생략)

# 3. 연구재료비 집행기한(과제종료전 2개월) 폐지

## 현장의 목소리



“과제종료 2개월 전부터 재료비 예산변경이 불가하나 필요시 재료비에도 예산변경 및 지출가능토록 개선 필요”



“연구마무리 단계의 재료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연구개발 특수성은 감안하여 재료비의 유연한집행 허용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재료비 구매계획 변경이 빈번한 연구개발 특성을 감안하여 재료비 집행기간제한규정 폐지 (공동관리규정개정, 199월)
- ✔ 그러나 부처별 규정 미개정으로 여전히 과거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만 허용

## 개선방안



부처별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재료비 집행기간제한 폐지의 현장 적용을 촉진



연구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를 분리하여 연구재료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집행을 인정

### 현행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완료한재료비만인정

### 개선(안)

협약종료 전까지  
구매 완료한재료비인정



# 4. 연구용 SW 라이선스의 협약기간 초과비용집행 인정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9항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대 학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되는 SW 라이선스임에도 과제기간을 초과하는 사용기간에 대해 연구비 정산 시 불인정”



출 연 연

“SW라이선스의 경우 최소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수개월 계약보다 1년 계약을 하는 경우 연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사용기간과 연구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불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용 SW 라이선스\*의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종료 후 집행으로 보아 초과기간 비율 만큼의 사용료는 정산 시 불인정 회수

\* 범용성SW(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외 연구에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 분석해석소프트웨어 등으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



# 4. 연구용 SW 라이선스의 협약기간 초과비용 집행 인정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9항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 개선방안

- ☑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는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집행 인정

\* 단,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 연구용 SW 라이선스 통합 구매·관리도 허용\*

\* 기관단위 연구용 SW 통합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사용내역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해야 함

## 개선 전/후 비교



# 5. 계좌이체를 통한 연구비 집행 인정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시행령



대학

“시약재료 구입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제출 요구”



출연연

“일부 부처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비카드로만 구매토록 하여 행정 불편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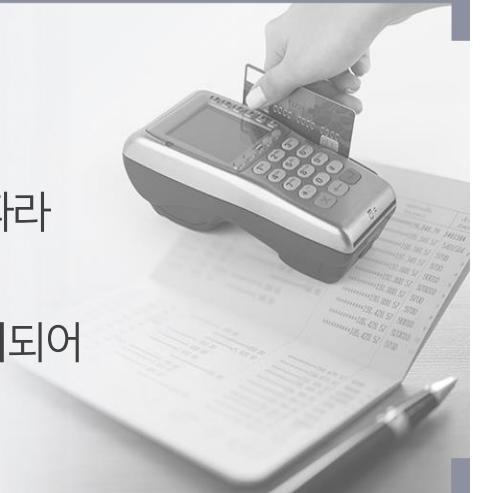
기업

“거래업체가 지방에 있는 경우 카드결제를 위해 지방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도 집행 가능
- ❑ 과거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연구장비·재료비 부당집행이 **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일부부처에서 **연구비카드**로만 **연구장비·재료** 구입을 허용
- ❑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된 현재까지도 **과거 관행이 유지되어 현장에서 연구장비·재료구입의 불편 호소**

\*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매번 거래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행정 부담 증대



# 5. 계좌이체를 통한 연구비 집행 인정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시행령

## 개선방안

- ✓ 해당부처의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비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한 연구비 집행 허용**

\* 단,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최소한의 집행증명문서 구비 필요

### 개선 전/후 비교

현행



**연구비카드**를 활용한  
연구비 집행 원칙  
(사유서 제출시 계좌이체 허용)



개선(안)



**연구비카드**  
**계좌이체**를 활용한  
연구비 집행 원칙



# 6. 학생연구자인건비 학기별 지급 허용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1조 제6항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대 학

학생인건비는 월 참여율 100% 기준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 등록금 총당이 어려우므로 인건비 제도개선 요망

학기 초에 등록금 대출을 받고, 월별로 받는 인건비를 쪼개어 대출을 상환, 연구실별 인건비 공동관리의 한 원인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중

✓ 다만, 학생인건비 월별 집행에 따라 등록금 지원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

※ 국내 사립대 등록금 : 학기당 500만원 내외 / 학생인건비(석사기준) : 월별 180만원

## 개선방안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매월 학생인건비 지급하되,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학기별 일괄지급도 허용

※ 우선, 기관단위(학과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도입(균등지급분에 한함) 후 확대 검토



# 7. 학사→석사, 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호 나목

시행령



대 학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하는 경우 졸업과 입학기간에는 재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건비 지급 곤란”

## 현황 및 문제점

- ✓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 ✓ 이에 학사에서 석사 또는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하는 학생은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 (약 1개월 내외) 동안 재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학생인건비 지급이 곤란

## 개선방안

- ✓ 동일대학 학사에서 석사 또는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개선

### 개선 전/후 비교

		학사	석사	박사
학생 인건비 지급 대상	현행	가능	불가	가능
	개선 (안)	가능	가능	가능

# 8.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 간소화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연구비 사용기준 고시

### 현장의 목소리



대학

10만원 이하 회의비에도 기관 자체 지침으로 결재 문서 및 참석자 서명 포함 회의록 제출 요구



출연연

회의록 작성시 내외부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10만원 이하 회의비의 경우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공동관리규정 개정(199월))

※ 단 10만원 초과 회의비의 경우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작성토록 규정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자체 지침으로 공동관리규정보다 과도한 증빙을 요구

예시 A기관 : 회의비 사용 시 내부품의서와 회의록 모두 요구  
B기관 : 회의록에 더해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 요구  
C기관 :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에도 회의록 등을 추가 요구

### 개선방안

-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을 '표준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제시

8-1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 폐지

8-2



10만원 이하 회의비의 경우 영수증만 제출

\* 지급 신청 시 회의개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는 명기

- 연구기관의 이행독려를 위해 '연구지원체계 평가' 시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적용실태 점검

### 회의비 집행증빙 문서

현행

연구기관마다 상이

내부품의, 회의록, 참석자  
전원 날인, 영수증 등

개선(안)

모든 연구기관 동일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만  
제출(단, 회의개요 명기)





# 9.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 요구 금지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1조 제5항

연구비 사용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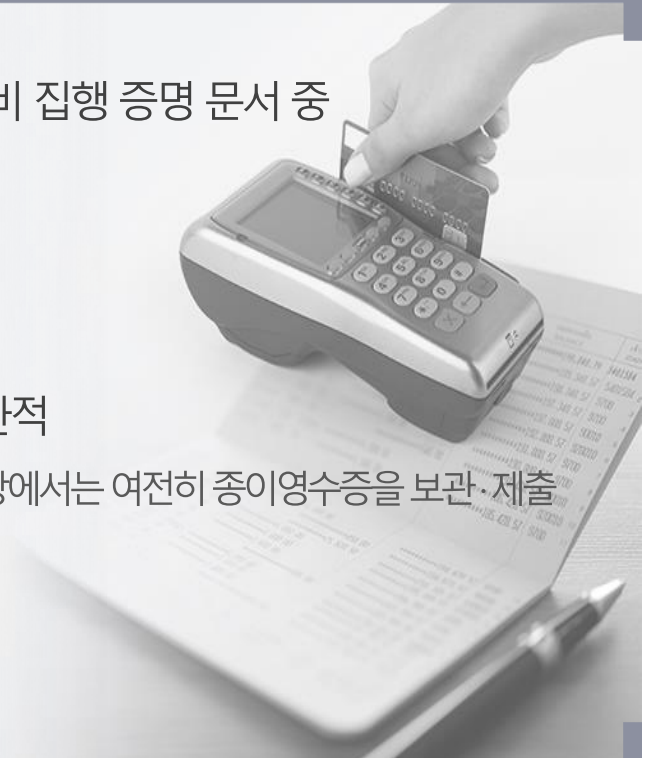


대 학

“종이영수증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연구실에서는 여전히 종이영수증 정리”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비 집행 증명 문서 중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제출을 원칙화 (199월)
  - '표준매뉴얼'에서 영수증서 중 일부 증명자료(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로 보관·제출 가능하다고 제시(199월)
- ✓ 하지만,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이 다양한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중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에만 적용되어 연구현장의 체감도 제한적
  - 전문기관의 관행, 감사에 대한 부담 및 상법, 각종 세법 등에 따른 의무 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영수증을 보관·제출
    - ※ 과기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의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형태별 현황 : 전자문서 71.4%, 종이문서 47.7%,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병행 39.0% 등
    - ※ 대학의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보관 현황 : 전자문서 4.1%, 종이문서 47.7%,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병행 39.0% 등





# 9.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 요구 금지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1조 제5항

연구비 사용기준 고시

## 개선방안

- ✔ (1단계)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해 모든 영수증서\*에 대해 연구비 정산 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도록 명확화
  - \* 카드매출전표(현행), 전자세금계산서(현행) 계좌이체내역서,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감사원에서도 현장의 종이영수증 보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 ✔ (2단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산 시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현장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문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 유형별로 제출·보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정산시 전자적 형태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1단계 모든 영수증서 2단계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영수증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영수증서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현행	1단계 개선	2단계 개선



# 10. 협약변경 사항 통일 및 절차 간소화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혁신법

시행령



대 학

연구 중 빈번하게 변동되는 참여율 변경, 세목간 예산변경 등의 경우에도 매번 공문과 함께 변경신청서 제출이 요구되어 연구몰입 저해



출연연

부처나 기관별로 협약변경의 통보 및 승인사항이 상이하고 요구되는 절차도 달라 행정부담이 가중



기 업

통보성 협약변경 시 변경내용 입력 외에도 공문 등 추가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연구지연이 발생하므로 통보 절차 간소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부처별로 규정 및 과제지원시스템 상 협약변경 시 승인/통보사항의 기준·절차가 상이
- ❑ 또한, 협약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통보사항에 대해서도 공문이나 협약변경신청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 등

\*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 사항 외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율 변경, 비목/세목간 예산변경 등

# 10. 협약변경 사항 통일 및 절차 간소화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혁신법

시행령

## 개선방안

- 10-1** (1단계) 통보성 협약변경에 대해서는 공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과제지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10-2** (2단계) 협약변경 시 승인/통보 사항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 마련

### 협약 변경기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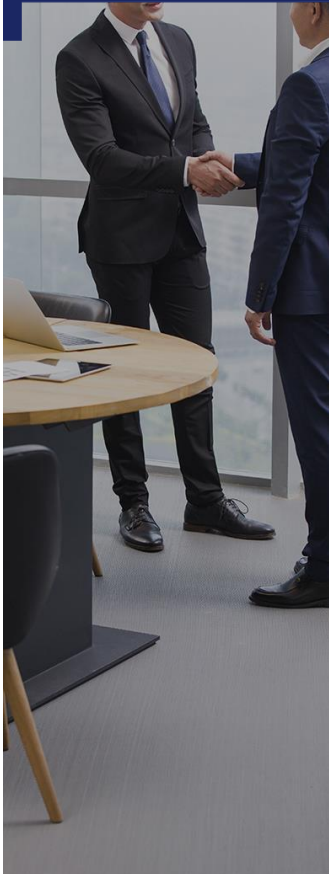
#### 현행

- 부처별로 상이
- 통보성 협약변경 시에도 과제지원시스템 입력+별도공문



#### 개선(안)

- (1단계) 통보성 협약변경 시에는 과제지원시스템 입력만
- (2단계) 표준화된 기준 및 절차 마련



# 11.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합리화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대 학

“회계연도 일치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최종보고서 작성이 집중되어 부담이 가중되므로 과제종료 후 절차 기간 확대”



기 업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확대하여 충분한 시간 확보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는 해당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연구현장 여건상 기한 내 제출에 애로
- ❑ 대부분의 과제들의 종료시점이 유사하여 특정 시점에 **최종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집중**
- ❑ 45일 이내라는 **일 단위** 기준으로 **제출마감일을 계산하기 불편**

# 11.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합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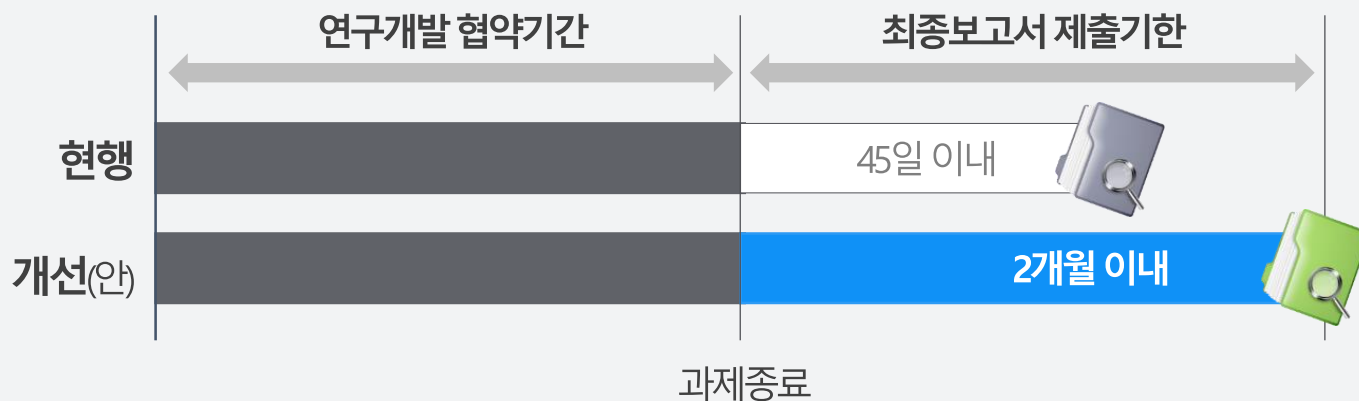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 개선방안

-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  
※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2개월 이상 확대 및 시기(시작일) 도입 등을 추가 검토



# 12.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만 답변

관련 근거

기초연구사업에서 우선 시범 적용

기초연구사업 시범운영

## 현장의 목소리



대학

“현행 연구비에서 간접비를 기관이 흡수하는 방식은 연구자와 대학 산학협력단 간 갈등 상시 초래”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자입장)** 경쟁을 통해 확보한 연구비 내에서 간접비를 떼어 대학산단에 지급함에 따라 연구자가 집행할 수 있는 **직접비가 축소**
- ✓ **(대학산단 입장)** 간접비 비율을 두고 연구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대학의 간접비 상한비율 만큼의 **간접비 확보에 애로**

## 개선방안

- ✓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범실시**
  - 연구과제 공고 시 연구비에는 직접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해당대학에 간접비를 별도 지급
    - \*가급적 대학별 간접비 상한비율을 준수하되 연구과제 공고 시 연구수행 대학을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상한비율 이내에서 조정
- ✓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타 사업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

## 개선 전/후 비교



# 13.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지원 필요 경비 지원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 지원비 신설)

시행령

## 현장의 목소리



대학

“연구지원인력이 연구과제 신청서 등의 제출, 사업설명회 참석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과제비에서 해당 경비 지원 불가”



출연연

“연구지원인력도 함께 회의하는 경우 회의비 집행, 출장비 지급 등이 어려워 인건비 외 필요한 비용 지급가능토록 개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고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공동관리규정 개정, 19.9월)
- ✓ 그러나, 인건비 외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여 연구지원인력이 관련 업무로 회의나 출장을 갈 경우 관련 비용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외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접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 또한, 간접비를 통해서도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평가시 연구기관의 지원노력을 평가

## 개선 전/후 비교

현행



인건비

개선(안)



인건비 + 연구지원경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직접비 집행가능 용도

# 1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 연단위 입력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 제2항

연구비 사용기준 고시



“Ezbaro 시스템상 참여연구원 개인의 참여율 관리가 월단위로 진행되어 행정업무 과중”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과제 참여율\*을 월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매월 참여율을 입력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연구원의 연봉총액에 따른 월급여 대비 해당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의 비율

## 개선방안(안)

- ✓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 월별 참여율 관리를 반기 별 또는 연 단위 관리\*로 확대 개선

\* 반기별 또는 연단위 관리를 시행할 경우 구간별 평균 참여율로 관리·입력

## 개선 전/후 비교

현행	개선(안)
월별 참여율 관리	반기 또는 연단위 관리